



고용노동부

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서부지청

수신 서덕순 귀하

(경유)

제목 취업성공패키지 위탁기관 참여자 부정수급 처분 통보

1. 관련: 취업성공패키지 부정수급 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(대구서부 고용센터-4609, 2019. 3. 21.)
2. 귀하의 취업성공패키지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업무지침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부정수급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.

< 처분 내용 >

- ① 부정수급 유형: 1단계 참여 중 취업이 확정되었으나 그 사실을 숨기고 IAP수립하여 참여수당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
 - ② 부정수급 처분: 부정수급 처분일로부터 5년간 재참여 제한
(재참여 제한기간: 2019.4.15. ~ 2024.4.14.)
3.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원처분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끝.

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서부지청장



주무관 공은숙 팀장 전결 2019. 4. 15. 이종민

협조자

시행 대구서부고용센터-6026 (2019. 4. 15.) 접수

우 41857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9 (내당동, 서부고용센터) / <http://www.moel.go.kr/daeguseobu>

전화번호 0536056423 팩스번호 0537204040 / konges12@korea.kr / 비공개(6)